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124

제출년월일 : 2015. 9. 30.

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1. 개정이유

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관계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고,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및 관련서식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, 과태료 징수 절차 등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도록 규정함 (안 제42조)

나.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함 (안 제43조, 제46조, 안 별지 제4호, 제5호, 제6호, 제7호, 제8호, 제11호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8조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의4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- 3) 입법예고(2015. 9. 2. ~ 2015.9.22.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- 4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폐지 등 없음
- 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6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, 부과·징수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43조,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그 밖에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46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, 관리)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[별지 제4호서식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>제 호</p> <p>수 신</p> <p>제 목 : 과태료 처분통지</p> <p>제 조 제 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「폐기물관리법」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가. 위반일시 :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나. 위반내용 :</p> <p>제 조 제 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제 조 제 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</p> <p>첨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</p> </div>	<p><삭 제></p>
<p>[별지 제5호서식]</p> <p><앞면></p>	<p><삭 제></p>

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

발행번호	제호	회계연도	년도	세입과목		계좌번호	
위반행위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주소		
과태료금액		원	납부기간	년 월 일	까지	납부장소	
위반사실	일시		내용				
위반법률	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 및 제8조		발급일자	년 월 일	의견진술기간	년 월 일까지	
위반자서명						단속공무원 확인	

특기사항

<을>

(피처분자통지용)

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

발행번호	제호	회계연도	년도	세입과목		계좌번호	
위반행위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주소		
과태료금액		원	납부기간	년 월 일	까지	납부장소	
위반사실	일시		내용				
위반법률	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 및 제8조		발급일자	년 월 일	의견진술기간	년 월 일까지	
위반자서명						단속공무원 확인	

1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3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2.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.
3.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년 월 일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<병>

(수납은행보관용)

과태료 납부서

발행 번호	계 호	회계연 도	년 도	세입과 목		계좌 번호	
위반 행위 자	성 명		주소				
과태 료금 액	원		납부 기간	년 월 일 까지	납부 장 소		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 년 월 일
 수 납 은 행 :

수납일부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<정>

(개인통지용)

과태료 납부 영수증

발행 번호	계 호	회계연 도	년 도	세입과 목		계좌 번호	
위반 행위 자	성 명		주소				
과태 료금 액	원		납부 기간	년 월 일 까지	납부 장 소		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 년 월 일
 수 납 은 행 :

수납일
부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취급자인

<무>

(구청통보용)

과태료 납부영수필통지서

발행번호	제호	회계연도	년도	세입과목	계좌번호
위반행위자	성명	주소			
과태료금액	원	납부기간	년 월 일	까지	납부장소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 년 월 일
 수 납 은 행 :

수납일
부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

[별지 제7호서식]

제 호 과태료 납부독촉장			
납부의무자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
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			
⑤ 위반사항			
⑥ 과태료금액			⑦ 당초 납부 기일

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
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
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

<삭 제>

[별지 제8호서식]

<삭 제>

제 호

과태료 부과취소(변경) 통지서

주소 :

성명 :

① 고지금액	② 취소(변경)액	③ 차액	비고

취소(변경)사유 :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(인)

[별지 제11호서식]

<삭 제>

과태료 수납부									
① 일련 번호	② 과 료 처 분 통 일 지	③ 과 태 료 처 분 발 일	납부기한		⑥ 금 액	납부의무자		이의신청	
			④ 당 초	⑤ 독 촉		⑦ 성 명	⑧ 주 소	⑨ 과 태 료 부 의 신청 일	⑩ 의 신청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상기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사항은 없음

4. 작성자

- 청소행정과 행정9급 한훈(330-1522)

관 계 법 령

□ **폐기물관리법** [시행 2015.1.20.] [법률 제13038호, 2015.1.20., 일부개정]

제68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.

□ **폐기물관리법 시행령** [시행 2015.7.24.] [대통령령 제26447호, 2015.7.24., 일부개정]

제38조의4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.